

공정거래 해외연수 실시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cf.or.kr)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24명과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태리 경쟁당국(AGCM)과 EU 경쟁당국 및 영국 공정거래청(OFT) 등을 방문하여 각 국가의 주요 경쟁정책과 카르텔에 있어서의 감면제도(Lenient Program) 운영상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해외연수는 유럽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경쟁당국의 카르텔에 대한 집행이 강력해 지면서 EU 경쟁법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기업경영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진 경쟁당국의 Leniency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경쟁법 적용에 대한 한국 기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동 연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LG경영개발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SK(주), (주)LG상사, (주)KTF, 삼성전자(주), SK텔레콤(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암웨이(주), (주)포스코, (주)신세계, CJ(주), LG-CALTEX정유(주), SK가스(주), SK C&C, (주)문화방송,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LG전자, (주)LGTELECOM 소속의 임직원 24명이 참석하였다.

1. EU의 Leniency Program

- ▶ Leniency Program 도입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인 법 감정(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 '96년도에 Leniency Program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실적이 저조(평균 3~4건/년)하자 '02. 2월 대폭적으로 제도개선
 - 조사개시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면책대상에 포함
 - 면책제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기 위해 재량의 여지가 많은 요건을 삭제
 - “신고자의 결정적 증거 제공”, “카르텔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등
 - 신고시 면책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정비(문서로 조건부 면책부여 통지 등)

▶ 개선 이후 구체적 감면요건과 정도

<완전면책>

- 신고자는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것
 - 또는 신고자가 조사개시 이후에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카르텔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것
- 완전면책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사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
 - 카르텔 관련행위를 중단할 것
 - 다른 사업자에게 카르텔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을 것

<감경(과징금액의 20~50%)>

- 감면정도는 두 번째 신고자(30~50%), 세 번째 신고자(20~30%), 그 이후 신고자(20% 미만임)
- 신고자가 경쟁당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상당한 정도의 추가가치(significantly added value)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 * 상당한 정도의 추가가치(significantly added value) 여부는 경쟁당국이 판단
- 카르텔행위를 즉각 종료할 것
- ▶ 신고한 모든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신고자 및 그 이하의 신고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운영
- ▶ 개인에 대한 형벌조항이 없음
- ▶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이 없으며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함

2. 영국 공정거래청의 Leniency Program

- ▶ 영국의 경쟁당국은 감면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완료(2000. 3월)
 - 이를 통해 감면제도를 카르텔을 적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코자 노력
-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EU 제도와 차이가 있음
 - 카르텔 참가기업간 신고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감면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
- ▶ 개인에 대한 형벌조항이 있음(무제한 벌금과 5년의 금고형)

- ▶ 부당공동행위 등에 참가하여 경쟁법을 위반한 임원은 최장 15년까지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 카르텔 참가자들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공동행위로 처벌하지 않음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의 개선

두 나라 모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추정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카르텔에 대한 상당하고 밑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망

(2) 감면제도의 보완

EU의 경우,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Leniency Program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지막 신고기업에 대해서까지 감경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르텔 적발비율이 대폭 높아졌음(EU의 경우 1996년 제1차 감면제도 도입 후 총 27건의 감면신청 중 11건에 대해 100% 감경혜택을 부여했으며, 2002년도 개정 감면제도 도입 후 2003년까지 총 34건의 완전면책신청 중에서 27건에 대해 조건부 완전면책을 부여하였음)을 볼 때 최초의 제보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는 우리나라 Leniency Program을 EU와 같이 모든 기업에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망

『제8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실시

본 연합회는 공정거래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39개 업체, 56명을 대상으로 『제8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8개 법



률, 11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과 해설 및 사례 중심의 토의과정으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본 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석준 과장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김치걸 과장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장재군 서기관의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및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임은규 과장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제도” 등 10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합회 홍미경 이사의 “CP 운용현황과 외국의 사례” 강의가 있었다. 한편, 연수 후 교육생들은 직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개선점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과정의 편성으로 주제를 줄이는 대신 주제별로 좀 더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차 가맹본부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4일(목)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가맹본부 임직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맹본부 임직원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가맹사업거래과 박홍진 사무관은 2002년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의 시장규모가 약 45조원, 가맹본부 1,600여개, 가맹점 12만여개로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가맹사업거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법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기본목적이 가맹사업거래의 촉진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서 엄격히 법집행을 하고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질서의 한 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